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등의 제재조치 등 〉

■ 안호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329호)

2026. 3.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한석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등의 제재 조치 등	2

I. 제안경위

2026년 1월 26일 안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년 1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안전관리전문기관·보건관리전문기관·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등을 지정하여 안전지도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해당 기관의 업무수행 능력을 평가·공개하여 차등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령 위반 등으로 지정해제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관에 대한 평가결과 조정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여, 평가·관리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지정해제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관이 평가결과를 부당하게 기관 홍보 등에 활용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나, 이를 금지하거나 제재할 규정이 없어 안전관리 현장에서 제도가 악용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정해제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관에 대한 평가결과 조정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이들 기관이 평가결과를 홍보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제74조 및 제175조).

Ⅲ. 검토의견

1.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등의 제재조치 등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지정이 취소된 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하여금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한 평가 결과를 홍보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면서, 최근 2년간 실시한 해당 평가 결과를 무효로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가 정지되거나 지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임(안 제21조 등).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안전관리전문기관 등) ① (생략)	제21조(안전관리전문기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 ----- -----결과(이하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평가결과”라 한다)-----.

③ ~ ⑤ (생략)

<신설>

<신설>

제74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① · ② (생략)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방법,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관하여는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

-----공개·조정 등에-----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홍보 등의 목적으로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평가결과를 활용할 수 없으며, 최근 2년간의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평가결과를 무효로 한다.

⑦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이 제4항제4호·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제74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결과(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평가결과”라 한다)-----

-----공개·조정 등에-----

④ -----제21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본다.	----- ----- -----으로,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평가결과”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평가결과”로 본다.
제175조(과태료) ① ~ ④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2. (생략) <신설>	제175조(과태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1. 2. (현행과 같음) 2의2. 제21조제6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평가결과를 홍보 등의 목적으로 활용한 자(제7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 16. (생략) ⑥ · ⑦ (생략)	3. ~ 16. (현행과 같음) ⑥ · ⑦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현행법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¹⁾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²⁾ 석면조사기관,³⁾

- 1) 제48조(안전보건진단기관) ① 안전보건진단기관이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보건진단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③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④ 안전보건진단기관에 관하여는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

작업환경측정기관,⁴⁾ 특수건강진단기관이⁵⁾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 본다.

- 2) 제100조(자율안전검사기관) ① 자율안전검사기관이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자율안전검사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자율안전검사기관에 관하여는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자율안전검사기관”으로 본다.
- 3) 제120조(석면조사기관) ① 석면조사기관이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관석면조사의 결과에 대한 정확성과 정밀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석면조사기관의 석면조사 능력을 확인하고, 석면조사기관을 지도하거나 교육할 수 있다. 이 경우 석면조사 능력의 확인, 석면조사기관에 대한 지도 및 교육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석면조사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제2항에 따른 석면조사 능력의 확인 결과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⑤ 석면조사기관에 관하여는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석면조사기관”으로 본다.
- 4) 제126조(작업환경측정기관) ① 작업환경측정기관이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측정·분석 결과에 대한 정확성과 정밀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측정·분석능력을 확인하고, 작업환경측정기관을 지도하거나 교육할 수 있다. 이 경우 측정·분석능력 확인, 작업환경측정기관에 대한 교육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작업환경측정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작업환경측정기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제2항에 따른 측정·분석능력 확인 결과를 포함한다)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기준·방법 및 결과의 공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유형, 업무 범위 및 지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⑤ 작업환경측정기관에 관하여는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본다.
- 5) 제135조(특수건강진단기관) ①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또는 수시건강진단을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건강진단을 할 수 있는 기관(이하 “특수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②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진단·분석 결과에 대한 정확성과 정밀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진단·분석능력을 확인하고, 특수건강진단기관을 지도하거나 교육할 수 있다. 이 경우 진단·분석능력 확인,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대한 지도 및 교육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특수건강진단기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제3항에 따른 진단·분석능력 확인 결과를 포함한다)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기준·방법 및 결과의 공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⑤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 신청 절차,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들 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이 사실상의 허가로 기능하여 지정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상시 점검할 필요가 있고, 이들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주의 중요한 의무나 절차와 관련되어 공공성이 크기 때문임.

해당 규정에 따라 271개의 안전관리전문기관, 151개의 보건관리전문기관, 598개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⁶⁾ 고용노동부장관의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음

【민간재해예방기관(안전·보건·건설 분야) 평가결과】

구분	계	S	A	B	C	D ⁷⁾	평가면제 (2년연속S)	평가등급 효력정지 ⁸⁾
안전관리전문기관	197	5	55	66	36	34	1	-
보건관리전문기관	137	14	42	36	33	11	1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335	12	76	137	76	17	10	7
총계	669	31	173	239	145	62	12	7

(자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한,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

⑥ 특수건강진단기관에 관하여는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본다.

6) 2026.1.1.기준

7) D등급에는 ‘24년도 1년간 수행실적이 없는 27개소 포함.

8) D등급 결과에 불복하여, 행정소송 진행에 따라 평가등급 효력정지 중인 기관임

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등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2024년에는 안전관리전문기관 2개소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2개소가 지정이 취소되었고, 2025년에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2개소가 지정이 취소되었음.

개정안은 지정이 취소된 안전관리전문기관과 보건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한 평가결과를 홍보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며, 이들 기관의 최근 2년 간의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또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서의 평가 결과를 무효로 하고,

지정받은 사항 위반, 관련 서류 거짓 작성 등으로 지정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⁹⁾ 안전관리전문기관과 보건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평가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조정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전문기관과 보건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평가 결과

9) 제21조(안전관리전문기관 등)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의 공신력을 제고하여 산업재해 예방 활동이 공정하고 적법하게 실시 되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이미 완료된 최근 2년 간의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또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서의 평가 결과를 소급하여 무효로 하는 것이 장래효를 가지는 지정취소 제도와 부합하는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고용노동부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평가의 기준”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에 근거한 고용노동부령 및 공단 내부 규칙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등이 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은 경우 평가 등급을 조정하고 있고, 지정이 취소된 안전관리전문기관등에 업무를 위탁한 업체에게 지정 취소 사실을 알려주고 있으므로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545